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지난 7월 1일 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illar 1 및 Pillar 2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합의문을 아래와 같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1 July 2021

Introduction

OECD, G20 및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illar 1 및 Pillar 2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각 Pillar에 관련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더욱 구체화된 추진 계획은 2021년 10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Pillar One

적용 범위 (Scope)

삼성 KPMG

TAX 6 본부

7 July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기본적으로 디지털세제 Pillar One 대상 기업은 글로벌 매출액 200억 유로 및 세전이익률(세전이익/매출액) 10% 초과 다국적기업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세제 시행 이후 7년동안 매년 진행될 관련 검토 절차 기간 동안의 동향을 살피어 Amount A에 대한 조세 확실성이 확보되는 등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시 향후 100억 유로로 기준 임계값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채굴산업 및 규제 산업인 금융산업은 Pillar One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연계점 (Nexus)

Amount A 배분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과세연계점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과세연계점은 특정 시장 관할권에서 1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킬 시 동 시장 관할권에 생성됩니다. 400억 유로 미만의 GDP를 기록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조세관할권의 경우 과세연계점 기준 임계값이 25만 유로로 낮아집니다.

과세연계점 방식은 조세관할권이 Amount A 배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작은 규모의 매출액의 근원까지 파악하는 작업 등 규제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활동 및 비용은 최소한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Amount A 배부 금액 (Quantum)

Pillar One 대상 기업에 한하여, 수익률 기준 10% 초과 매출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액 배부 기준으로 과세연계점이 존재하는 각 시장 관할권에 배분될 것입니다.

매출귀속 기준 (Revenue sourcing)

매출액은 매출귀속 기준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가 소비되는 최종 시장 관할권에 귀속됩니다. 이러한 매출귀속 기준의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의 종류별 구체화된 귀속 규칙이 고안될 예정입니다. 다국적기업은 귀속 규칙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 특정한 사업적 사유 및 사실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과세표준 결정 (Tax base determination)

Pillar One 대상 다국적기업의 손익 정보는 약간의 조정 항목을 반영한 재무제표 상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구분회계 적용 (Segmentation)

구분회계는 Pillar One의 적용 범위 기준에 부합하는 구분 사업의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 상 공시되고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케팅 및 판매 활동 수익에 대한 세이프 하버 (Marketing and distribution profits safe harbour)

Pillar One 적용 다국적기업의 초과 이익이 시장 관할권에서 이미 과세되고 있는 경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이프 하버가 적용되어 동 금액이 Amount A를 통해 시장 관할권에 배부되는 초과 이익의 최대값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이프 하버 적용 범위 등의 사항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이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고안될 예정입니다.

이중과세효과 제거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시장 관할권에 배부되는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금 공제 또는 세액 공제의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익을 발생시키는 법인은 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 확실성 (Tax certainty)

Pillar One 대상 다국적기업은 의무적인 분쟁 방지 및 해결 방식을 통해 이전가격 및 사업 수익 배분 등을 포함한 Amount A에 관한 문제 및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가 Amount A와 관련이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분쟁 또한 실질적인 분쟁 방지 및 해결 방식의 적용을 지연시키지 않고 의무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특히 BEPS Action 14 상 상호검토(peer review)를 이연할 수 있고 상호합의(MAP) 분쟁이 없거나 적은 개발도상국 경제와 관련하여, Amount A 문제에 대해 의무적인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추후 더 많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Amount B

특정 관할권 내 기본적인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원칙 적용은 제도 운영이 어려운 나라에 맞춰 더욱 더 간편화되고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Amount B에 대한 최종적인 고안은 2022년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조세행정 (Administration)

다국적기업 내 특정 법인이 Pillar One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납부 의무 등을 포함하여 Pillar One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일방적 조세체계 (Unilateral measures)

새로운 국제조세 규정인 디지털세 Pillar One 도입은 기존 각 나라에 도입되어온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es) 등 유사한 일방적 조세체계를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정 과정입니다.

도입 및 시행 (Implementation)

추후 Amount A의 시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Amount A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최종 승인되고 2023년에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Pillar Two

전반적인 사항 (Overall design)

Pillar Two는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Pillar Two는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소득산입 규칙(The income inclusion rule, "IIR") 및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 되는 경우 지급인의 거주지국에서 그 비용공제를 부인하거나 IIR에 의한 과세분에 해당하지 않고 저율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비용공제부인 규칙(The undertaxed payment rule, "UTPR") 등의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Pillar Two 는 거주지국에서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원천지국 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등 조세조약과 관련된 규정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 단계 (Rule status)

소득산입 규칙(IIR) 및 비용공제부인 규칙(UTPR)을 포괄하는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rules")은 다음의 공통적인 접근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성하는 국가는

-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을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도입하기로 선택한 경우 IF에서 동의한 모델 규칙 및 지침을 포함하여 Pillar Two에서 제시된 결과물과 일맥상통한 방식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를 구성하는 상대 국가의 규칙 적용 순서 및 세이프 하버 적용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포함하여 세원잠식방지 규칙 적용과 관련한 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적용 범위 (Scope)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은 BEPS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country by country reporting)의 적용 임계값과 동일한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글로벌 매출액을 달성한 다국적기업에 한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조세관할권은 7.5억 유로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다국적기업에도 소득산입 규칙(IIR)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국제 기관, 비영리 기관, 연금 기금 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투자 목적 기업 또는 기업, 조직 또는 기금의 단순 지주회사 등을 포함한 기업은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규정에 관한 사항 (Rule design)

소득산입 규칙(IIR)에 따라 80% 미만의 지분 보유에 대하여 지분 분할소유 적용 방안(split-ownership rules)을 적용하여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으로 추가 과세분을 배분합니다.

비용공제부인 규칙(UTPR)에 따라 합의된 방식으로 최종 모회사의 조세관할권에 위치한 법인들을 포함한 저세율국의 관계사로부터 추가 과세분을 배분합니다.

유효세율 산정 (ETR calculation)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에 따르면,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 및 Pillar Two에서의 조세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조정으로 결정되는 재무정보 상 과세 표준(tax base) 및 대상 세액(covered taxes)의 정의를

활용하여 조세관할권별로 산출된 유효세율의 비교 방식으로 추가 과세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현존하는 조세 행정에 맞추어 소득이 3~4년 내 배당 등으로 분배되고 최저한세 이상으로 과세될 시 추가적인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Minimum rate)

소득산입 규칙(IIR) 및 비용공제부인 규칙(UTPR) 목적상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15%입니다.

적용 예외 (Carve-outs)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은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적용 예외 (formulaic substance-based carve-out)를 활용하여 유형자산 및 급여 장부가액의 최소 5% (도입 전환 시점부터 5년동안 임시적으로 7.5% 적용)에 상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예외 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은 최소 허용 공제(*de minimis* exclusion) 방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기타 적용 예외 (Other exclusions)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은 OECD 모델 조세 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상 소득의 정의 내용과 부합하는 국제 운송 소득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간소화 작업 (Simplifications)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의 행정적 절차가 목적 부합하도록 하고 정책의 목적에 따라 균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규제 준수 및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도입 내용에 있어 세이프 하버 및 기타 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무형자산 발생 소득 규칙과의 공존 (GILTI co-existence)

Pillar Two에 의해 조세관할권별 최저한세에 도입하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글로벌 무형자산 발생 소득 규칙(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US GILTI")과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합니다.

원천지국과세 규칙 (Subject to tax rule (STTR))

포괄적 이행체계(IF)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Pillar Two에서 합의되는 중요한 사항인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IF) 구성국은 거주지국에서 STTR 최저한세 대비 명목세율이 낮게 과세되는 이자수익 및 로열티수익 등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원천지국과세 규칙(STTR)을 적용할 때, 포괄적 이행체계(IF)의 구성국 중 개발도상국과의 거래에서는 요청받을 시 동 개발도상국과 쌍방의 조세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과세권은 최저한세와 원천세율과의 차이에 대한 부분에 부여됩니다.

STTR 최저한세는 7.5%에서 9% 사이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도입 및 시행 (Implementation)

포괄적 이행체계(IF) 구성국들은 합의에 도달하여 도입 방안에 대해 공표할 것입니다. Pillar Two는 2022년에 제도화되어 202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입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다자간 협약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에 대한 내용 등 세원잠식방지 규칙(GloBE rules) 적용과 관련한 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GloBE Model 구현
- 다자간 협약과 함께 STTR 모델 규칙 적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
- 비용공제부인 규칙(UTPR) 시행에 대한 이연 적용 등 과도기 적용 규칙

Next steps

이번 합의는 실질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용되는 강력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IF) 구성국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 및 적용 예외(carve-outs) 간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와 10월까지 합의되는 도입 내용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속적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방안 또한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